

창원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57084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한 가액배상청구등]

전 문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피고, 피항소인 1. C

2. D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3. 31.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4659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8,041,451원, 원고 B단체(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6,407,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이 사건 2021.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망 E 사이에 2019.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9,779,556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과 망 E 사이에 2019.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69,334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1)

3.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C은 7,216,580원, 피고 D은 10,824,8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조합에게, 피고 C은 2,562,976원, 피고 D은 3,844,4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 3행의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나. 제4쪽 제17행, 제5쪽 제9행, 제19행의 “망”, 제7쪽 제14행, 제9쪽 제5행, 제7행의 “채무자”를 각 삭제한다.

다. 제7쪽 제16행의 “2019. 6. 17.”을 “2019. 6. 27.”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 조합은 E의 처분행위 당시에는 E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제한 이전의 원고들의 손해액인 24,448,891원을 E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E이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므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E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책임제한 이전의 손해액인 24,448,891원을 실질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 득 관, 판사 윤 정, 판사 이큰가람

1)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24,448,891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3, 4항 기재 금원들을 모두 합하면 24,448,890원이므로,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2항과 같이 피고들 지분별 금액을 나누어 기재한다.